

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번호	제43호
의결년월일	2010. 9. 10 (제164회)

제안년월일 : 2010. 8. 24.
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□ 개정이유

- 본회의 자유발언제도와 교섭단체 대표연설제도를 도입하여 발언기회의 확대를 통한 본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민주적인 의사전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의장은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한 때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,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6조의2 신설).
- 나.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이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함(안 제76조의2 신설).

부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부천시의회 회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바로 신청한다.

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 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.

제7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6조의2(교섭단체 대표연설)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전반이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대표연설을 들을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36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시정질문이 없는 회기에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 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</p> <p>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경유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의장에게 바로 신청한다.</p> <p>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 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<p><u><신설></u></p>	<p>제76조의2(교섭단체 대표연설 제 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 정 전반이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대표연설 을 들을 수 있다.</p>